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11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한정애·김성회·이학영

추미애 · 박홍근 · 양문석

조정식 • 권향엽 • 김교흥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온 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에 의하여 오직 감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목적 실현에 한정적 으로 부합하고 있음.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대상 사업 범위 또한 감축 사업 외에 배출 및 적응 등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의 사업 선정과 감축량 산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탄소중 립 정책과 연계토록 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909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 중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를 "예산, 기금 및 조세 감면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로, "온실가스감 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인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문별감축목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와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24조(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 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 도) ① -----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 ----예산, 기금 및 조세감면 등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 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 기후변화 적응에-----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 다. ---기후위기대응인지-----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 <신 설> 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를 제 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감축목 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문 별감축목표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와 유 기적 ·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